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록 의무 절차에 관한 법무부 규정 발효

2016년 2월 24일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록의 절차와 요건에 관한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를 발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을 의무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청(Directorate General of IP, "DGIP")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43조에 따라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DGIP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각 법률에 등록 의무에 대한 규정만 산발적으로 존재하였으나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의 발효에 따라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등록 신청인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에 따라 Licensor(권리자) 또는 Licensee(사용권자) 또는 대리인(Proxy)이 라이선스 계약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실용디자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함에 적용되며 등록 신청서는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DGIP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법무부에 직접 등록하거나 DGIP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준비 요건은 동일합니다.

- 라이선스 계약 사본

- 유효한 특허, 상표, 실용디자인, 집적회로 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 비밀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 사본
- 등록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고, 국익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술 발전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법률, 법규 및 공공질서에 위반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신청인의 진술서
- 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원본

3. 심사 절차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DGIP는 요건 충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이 모두 제출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일,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10일을 추가적으로 허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DGIP는 신청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4. 등록 기간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하면 이는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재신청하는 경우 등록되는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여야 합니다.

5. 적용시기

법무부 규정 2016년 제8호 발효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라이선스 계약은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39/2016 발표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최근 세수 확보 및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 23일 재무부령 No. 39/PMK.03/2016(이하, 재무부령 39/2016)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령 39/2016에 따르면, 현재 약 23개의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Directorate General of Taxes)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회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 정보의 형태로 매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거나 또는 국세청장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016년 5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부령 39/2016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회사의 의무는 인도네시아 은행법에 따른 개인예금 정보 보호와 관련된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소지자의 소비 내역이 연간 신고하는 소득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업계 및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별표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재무부령 39/2016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발급회사]

1. Pan Indonesia Bank, Ltd. Tbk.
2. PT Bank ANZ Indonesia
3. PT Bank Bukopin, Tbk.
4. PT Bank Central Asia, Tbk.

5. PT Bank CIMB Niaga, Tbk.
6. PT Bank Danamon Indonesia, Tbk.
7. PT Bank International MNC
8. PT Bank ICBC Indonesia
9.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10. PT Bank Mandiri (Persero), Tbk.
11. PT Bank Mega, Tbk.
12. PT Bank Negara Indonesia 1946 (Persero), Tbk.
13. PT Bank Negara Indonesia Syariah
14. PT Bank OCBC NISP, Tbk.
15. PT Bank Permata, Tbk.
16. 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17. PT Bank Sinarmas
18. PT Bank UOB Indonesia
19. Standard Chartered Bank
20. The 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
21. PT Bank QNB Indonesia
22. Citibank N.A
23. PT AEON Credit Services

[별표 2 : 신용 카드 발급회사가 국제청장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1. 은행명(은행 또는 신용 카드 발급업자)
2. 신용 카드와 연결된 계좌 번호
3. 판매자(merchant) ID
4. 판매자(merchant) 상호
5. 신용카드 소지자 이름

6. 신용카드 소지자의 주소
7. 신용카드 소지자 신분증 번호(인도네시아인의 경우NIK,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번호)
8. 신용카드 소지자 세적등록번호(NPWP)
9. 신용카드 결제 월
10. 신용카드 거래일의 날짜
11. 신용카드 거래 관련 세부사항세부 사항
12. 신용카드 거래 금액(인도네시아 루피아)
13. 신용카드 한도